최종변론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①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을 강조(일본군의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②조선인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매춘의 틀안에 있는 여성이라거나 자발적으로 간매춘부이고, ③조선인 위안부가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인 병사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안하여 주는 위안부로생활하면서 일본군과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서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과연 검찰의 주장대로 이 사건 도서에서 서술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검찰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①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어, ②그 감시 아래 전시 상황의 중국, 동남아 등지에 설치된 위안소에 갇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하며 성적 쾌락의 제공을 강요당한 '성노예'에 다름 없었을 뿐 본질적으로 매춘부가 아니었고, ③일본국과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으며, ④일본군은 위와 같이 설치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고, 위안부를 국외송출하는 과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하였는지 확인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표현이 객관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인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는지 알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은 우선 이 사건의 피해자가 과연 명예훼손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됩니다.

I. 명예훼손죄의 주체성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 사건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서술한 내용이 이 사건 위안부들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평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사건입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집단의 구성원을 모두 지적하는 내용으로 서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독자적으로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집단의 구성원도 집단명칭에 의하여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 명예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집단의 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집단명칭이 특정되어야 하며, ②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도 집단의 구성원을 모두 지적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예외를 인정하는일반적인 평균판단이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 서에서 '한명의 예외 없이 모든 조선인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이다'라 고 서술하거나,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 또는 강제동원은 한건도 없었다'고 서술하여야 하며, 또한 '한명의 예외 없이 모든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자궁심을 가지고 일본인 병사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안하여 주는 위안부로 생활하면서 일본군과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라고 서술하여야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만 보아도 '조선인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매춘의 틀안에 있는 여성이라거나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기본적으로 라는 의미에는 예외적으로 매춘의 틀안에 있지 않은 여성도 존재한다는 의미라할 것이며,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은 "물론 군인이나 헌병에 의해 끌려간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개별적으로 강간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는 서술은 강제동원의 경우도 존재하였다는 명시 적인 서술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술은 집단의 구성원을 모두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며, 예외를 인정하는 일반적인 평균판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 피해자 특정의 문제

또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①집단의 크기, ②집단의 성격과 ③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서술한 내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쟁점 이라 할 것이며, <u>검찰의 공소사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보</u> 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①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총 238명이며 ②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는 45명뿐이고, ③이 사건 피해자들이 오래 동안 국내 및 국외에서 일본정부의 사죄 및 법적 책임을 꾸준히 주장하였고, ④이들에 대한 국내 및 국외에서의 언론보도, 정부 및 학계에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이에 대해 책자를 발간하였으므로 집단표시에 의할지라도 피해자들이 이사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합니다.

1) 위안부 집단 범위 확정의 모호성

그러나 우선 검찰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u>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의 서술로 인</u>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집단이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총 238명'의 집단인지,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 45명'의 집단인지, '오래 동안 국내 및 국외에서 일본정부의 사죄 및 법적 책임을 꾸준히 주장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언급한 위안부 집단의 범위 조차도 확정을 못하고 있다 할 것이며, 그 이유는 이 사건 도서에서 피고인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뿐만 아니라, '일본인 위안부'의 사례도 인용하고 대만, 중국, 네덜란등 등의 위안부의 사례까지도 인용하고 있어, 이사건 도서에서 피고인이 말하는 '위안부'란 '과거 위안부 피해를 입은 위안부전체'를 의미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8만명에서 최대 20만명에 달하는 위안부 집단을 상정할 경우 개별구성원을 피해자로 특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할 경우 <u>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언급한 위안부의 범</u> 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이 사건 <u>명예훼손의 피해</u> 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언급한 위안부의 범위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이 사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정부에 등록을 한 위안부'의 특정성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을 한 238명도 개별적으로 특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우선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 <u>일단 당해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숫자가 고려되어야</u>합니다. 합리적인 일반인이라면, 집단의 구성원수가 많을수록 그 발언과 집단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과의 관련성을 희박하게 볼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당해 교사 총 66명 중 37명이 위 동지

회 소속교사인 경우", "대전지검 검사는 25명, 대전고검 검사는 6명", "10명 내외의 검사로 구성된 '검찰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 "소속인원이 21명인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등의 경우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경우 구성원 개개인으로 특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기준은 37명, 25명, 6명, 10명 내외, 21명 정도의 소수라 할 것이나,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을 한 238명이라는 숫자 역시 위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집단명칭을 표시함으로써 그 집단 내에 있는 개개인을 특정하여 표시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그러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아니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 등록을 하여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전체 20만명으로 추정되는 위안부 중 극히 일부가 위 법에 의하여 피해자로 '등록'을 하였다라는 우연적 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도서에서 말하는 위안부의 범위가 확정되었으며, 개별적 특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의 특정성

현재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가 45명으로서 소수이기 때문에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되나, <u>8만명에서 10만명 또는 2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위안부가 수십</u>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망 등의 사유로 몇십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소수가 되었고, 따라서 위안부라는 집단의 범위가 생존 위안부로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이사건에서 말하는 <u>위안부는 생존하는 수십명의 위안부로 개별적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는 것은,</u>

집단표시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특정이 불가능했던 집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망이라는 사유로 소수가 되어 개별적으로 특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논리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위에서 본 바와같이 어떤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그러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아니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 일정시기에 생존하고 있다는 우연적 사실만으로 이 사건 도서에서 말하는 위안부의 범위가 확정되었으며, 개별적 특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일본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인 위안부'의 특정성

또한 이 사건 판결은 전체 20만명으로 추정되는 '조선인 위안부' 중 '일본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인 위안부 또는 조선인 위안부'로 특정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본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인 위안부 또는 조선인 위안부'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1990년대 일본이 지급한 '기금'의 보상금을 받은 위안부의 경우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위안부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일본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한 위안부 중 이미 사망한 경우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일본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인 위안부 또는 조선인 위안부'는 그 범위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일본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언제라도 일본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위안부가 얼마든지 있다는 점 및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검찰이 주장하는 '일본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인 위안부 또는 조선인 위안부' 집단이 과연 집단으로서 형성이 될 수 있는지 조차 의문스럽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u>집단의 성격이 비조직적이고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u>은 집단으로 표시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특정의 정도를 강화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u>구성원 개</u>개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희석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들에 대한 국내 및 국외에서의 언론보도, 정부 및 학계에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중언,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이에 대해 책자를 발간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국내 및 국외에서의 언론보도, 정부 및 학계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이에 대해 책자를 발간하였으 므로 집단표시에 의할지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20만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위안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검찰의 주장과 같이 '20만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위안부'라는 집단의 내부에 있는 일부 위안부 집단에 대하여만 언론보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정부 및 학계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수집, 책자발간 역시 '20만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위안부'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임은 명확하다 할 것이며, 검찰주장과 같이 '20만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위안부'라는 집단의 내부에 있는 일부 위안부 집단을 목적으로 증언수집이 이루어지고 책자발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설령 언론보도, 정부 및 학계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수집, 책자발간 등이 검찰의 주장과 같이 '20만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위안부'라는 집단의 내부에 있는 일부 위안부 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언론보도, 정부 및 학계에서 피해자들의 증언 수집, 이에 대해 책자를 발간하였다는 것만으로, '20만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위안부'라는 집단 내에서 일부 위안부 집단의 지위를 달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불명확하고 곤란한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생존' 또는 '등록'이라는 기

준으로 피해자로 특정이 되었다는 주장의 부당성은 물론이며, '일본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인 위안부 또는 조선인 위안부' 역시 집단의 범위확정의 모호성, 집단으로서의 비조직성, 집단의 비저명성, 집단 내에서 원고들의 지위, 구성원의 규모, 이 사건 도서의 표현 등 정황으로 보아, 이 사건 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내지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 정부에 사죄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 원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Ⅱ. 구성요건해당성 - 사실의 적시

1. 의견의 표명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서술한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야 하며,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일람표의 서술이 구체적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견해의 표명에 불과한지 문제된다 할것입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사실의 적시'란 <u>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u>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가라유키상의 후예.' '위안부'의 본질은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서술들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의견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면서,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문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되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들이 <u>간접적이고 우회적인</u>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는지 문제되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4726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라 하겠습니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명예훼손 인정 -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11, 12, 13, 27, 30, 34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11, 12, 13, 27, 30, 34의 표현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면서,

				민사판
순 번	쪽	내 용	비고	결문
				순번
2	32	'가라유키상의 후예.' '위안부'의 본질은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자발적 매춘	2
3	33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u>'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u> 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 가 있다.	4	3
4	38	그에 따라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u>일반적인 '위</u> 안부'의 대다수는 '가라유키상'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 <u>야 한다.</u>	"	4
5	38	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수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강제연행 부정	5
11	112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 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u>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u>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	자발적 매춘	11
12	120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 이해했지만, '위안'이란 기본적으로 그 두 요 소를 다 포함한 것이다.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 조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u>기본적으로는 수입</u> 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	12
13	130	아편은 하루하루의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은 주인 이나 상인들을 통한 직접사용이었다.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보아야 한다.	애국적 · 자궁적 협력자	13

			로서	
			동지적	
			관계	
07	0.40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	자발적	0.0
27	246	<u>성들</u>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매춘	26
30	291	'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위 안소'의 최대 공급원"(110쪽)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	자발적 매춘	29
34	296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자발적 매춘	33

위 범죄일람표의 표현들에 대하여 "이 부분은 일반 독자에게 '조선인 일본 군 위안부'가 <u>'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성노예와 같은 삶을</u>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인식보다는,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되어(피고 박유하가 서술한 바와 같이 구조적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도 포함된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과 '위안소에서 일본군과 성적 쾌락을 위해 아편을 사용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 위와 같이 "암시한다"라고 판결한 것은, 피고인의 서술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u>피고인의 의견표명에 불과</u>하고, 피고인의 의견표명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서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되어(피고 박유하가 서술한 바와 같이 구조적 강제로 어쩔수 없이 한 선택도 포함된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과 '위안소에서 일본군과 성적 쾌락을 위해 아편을 사용한 사람'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사실의 경우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서술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의견표명으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인격권 침해 인정 -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8, 9, 10, 14, 16, 17, 18, 19, 21, 22, 23, 24, 25, 28, 29, 31, 32, 33, 35

또한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8, 9, 10, 14, 16, 17, 18, 19, 21, 22, 23, 24, 25, 28, 29, 31, 32, 33, 35의 표현들에 대하여.

순 번	쪽	내 용	비고	민사판 결문 순번
1	19	센다는 '위안부'를,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며 도운'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왜 위안부에게는 없느냐는 것이 이 책의 관심사이자 주장이기도하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u>어떤</u> 책보다도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	애국적 · 자긍적 협력자 로서 동지적 관계	1

6 1 고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가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지만, 그러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긍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응모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온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 /	6
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 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다. 물론 돈도 벌고 싶었겠지만요.(26쪽) 물론 이것은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다. 그러나 <u>조선인 위안부 역</u> 시 '일본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고 해야 한다.	7
가족과 고향을 떠나 머나먼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역할. 그 기본적인 역할은 수없는 예외를 낳았지만,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싹틀 수 있었다.	8
9 67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u>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 적으로 동지적 관계</u> 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녀들에게는 소중했을 기억의 흔적들을 그녀들 자신이 "다 내삐렀다는 점이다." 그것 놔두면 문제될 까봐"라는 말은, <u>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u> 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9
## ## ## ## ## ## ## ## ## ## ## ## ##	10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u>기본</u> <u>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이었다.</u> 다시 말해 같 은 '제국 일본'의 여성으로서 군인을 '위안'하는 것이 그녀들에 게 부여된 공적인 역할이었다.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14
16 158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u>"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u> // // // // // // // // // // // // //	15

		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기무라 사이조)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 옳을 수도 있다.		
17	160	오히려 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 다(「화해를 위해서」).	"	16
18	160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 '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긍지 - 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 - 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기무라 사이조)는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	17
19	190	한 개인으로서의 '위안부'의 또 다른 기억이 억압되고 봉쇄되어 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일본 군인과 '연애'도 하고 '위안'을 '애 국'하는 일로 생각하기도 했던 위안부들의 기억이 은폐된 이유는 그녀들이 언제까지고 일본에 대해 한국이 '피해민족'임을 증명해주는 이로 존재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위안부'들에게 개인으로서의 기억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녀들은 마치 해방 이후의 삶을 건너뛰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까지고 '15살 소녀 피해자'이거나 '싸우는 투사 할머니'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	18
21	205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서 동원되었고 <u>일본</u> <u>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u> 한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했다.	"	20
22	206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 배척하는 순결주의 와 가부장적 인식도 오랫동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 게 한 원인이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성적으로 더럽 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u>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u> 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말하자면 '더럽 혀진'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	21
23	206	그런 한, '피해자'소녀에게 목도리를 둘러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그녀들이 <u>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u> <u>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u> 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	22
24	207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4	23

25	208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 력자의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	24
28	265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	"	27
29	265	그 이유는 '조선인 위안부'가 '전쟁'을 매개로 한, 명확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이면서, 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	28
31	294	그들이 <u>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제</u> 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같은 존재였기 때문 <u>이다.</u>	"	30
32	294	그녀들이 '낭자군'이라고 불렸던 것은 <u>그녀들이 국가의 세력을</u>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	31
33	294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 도 했다.	"	32
35	306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본의 적국 여성들의 <u>'완벽한 피해'</u> 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협력'의 기억을 벗 <u>겨낸</u> 소녀상을 통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가부장 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를 또 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 시키는 일일 뿐이다.	4	34

"먼저 순번 1은 이 사건 도서의 첫 부분으로, 제일 먼저 센다 가코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소개하면서 센다 가코의 분석에 대한 긍정적 인 평가를 한 후, 이 책을 주로 인용하면서 업자들이 관여하였다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u>피고 박유하의 센다 가코의 분석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u>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순번 6, 7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역할이 성적 욕구를 받아주는 일만이 아니라 부상병 간호, 빨래와 바느질 등 정신적 위안까지 요구되었다고 소개한 다음,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이 이러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내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 내지 평가한 피고 박유하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순번 8, 9, 10은 <u>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의 진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기존의</u> 위안소와 다른 생활을 소개한 다음, 이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서 피고 박유하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순번 14 내지 17은 일본인 지원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인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식민지 제도와 제국의 개념을 이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근거로, 순번 18 내지 24는 국내 정대협의 위안부 해결 방법을 반박하기위한 근거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와 군인의 관계'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의 역할'을 평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순번 27, 28 부분의 경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조치에 나서야 할 세 가지 이유 중 미완의 1990년대 사죄와 보상을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서 '일본제국'의 시각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분석 평가하고, 순번 30, 31, 32, 34 부분도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 평가한 것이므로, 결국이 부분들은 <u>피고 박유하의 주관적 평가로서 의견 표명으로 봄이 타당</u>하다"고 판단하면서, 명예훼손을 부정하면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는 위 서술은 피고인의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도 어떠한 구체적 사실의 존재에 대한 암시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 의할 경우 위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범죄일람표의 사실들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라. 불인정 - 범죄일람표 20, 26

순				민사판
번	쪽	내 용	비고	결문
20	191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 만, 당시에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u>강제연행과 강제 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은 이상(</u> 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	강제연행 부정	순번 19
26	215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죄했고 2012년 봄에도 다시 사죄를 제안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대협이 주장하는 국회입법이 이루어질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1965년 조약, 그리고 적어도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는 점,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여서 개인의범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한 '국가범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점에 있다.	4	25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지원

운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서술된 표현이고, 정대협의 주장에 대한 반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체적인 흐름과 다른 기재 부분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들은 정대협의 입법요구 주장을 적시한 다음 반박의 근거로 강제연행의 주체와 국가범죄에 대해 평가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u>의견을 표명한 것</u>이고, 피고 박유하가 주관적으로 일본국의 국가책임을 부정한다고 하여 <u>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평가가 객관적으로 저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박유하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u>하다."라고 판시하면서 명예훼손은 물론 인격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의 취지 역시 위 범죄일람표의 사실들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 소 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 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 역시 피고인의 서술에 대하여 ①인격권 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경우와 ②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경우 뿐만아니라 ③명예훼손을 인정한 경우 등 세가지 유형 전부에 대하여 의견 표명으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Ⅲ. 구성요건해당성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여,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①일본군의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②조선인 위안부를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이고, ③조선인 위안부가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자궁심을 가지고 일본인 병사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안하여 주는 위안부로 생활하면서 일본군과 동지적인 관계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였는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 1. 피고인은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사용한 '강제동원'은 좁은 의미의 강제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강제동원'의 의미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강제력 행사의 방법으로 일본군에 의하여 징집의 형태로 납치된 경우 즉 '좁은 의미의 강제동원 "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군에 의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징집이 아닌 경우, 즉 협박이나 유인, 취업

사기 등의 기망행위 등 위법적인 수법으로 피해자를 모집한 다음 상시적 감시 또는 감금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을 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맡은 일의 선택과 맡은 일에서 벗어날 자유를 박탈한 상태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강제연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구조적 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직접적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징집하는 강제동원과 구별하여 이 사건 도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강제연행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안부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로 간 것이라고 서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좁은 의미의 강제동원' 뿐만아니라 '넓은 의미의 강제동원' 즉 구조적 강제역시 강제동원으로 명백히 인정하고 있으며, 이 역시 일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 사건 도서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좁은 의미의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일본의 부정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좁은 의미의 강제동원만을 강제동원이라 표현하고 넓은 의미의 강제동원을 구조적 강제라고 하여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혼동이라 할 것입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사용한 '구조적 강제'의 의미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구조적 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넓은 의미의 강제동원'의 개념을 보다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강조한 '구조적 강제'란 ①업자와 유괴범들에 의한 강제동원, ②식민지인으로서 일본국으로부터 명확한 '굴종'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강요당하는 식민지인으로서의 구조적 강제, ③여성의소유권을 남성이 가졌던 시대의 남성중심적, 가부장제하에서의 구조적 강제, ④빈곤 등의 사유,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진 것을 배경으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지향한 그녀들의 현실탈출 소망과 그녀들이 가족의 보호기능에서 단절되어 있음을 이용한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강제, ⑤성노동 자체의 구조적 강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넓은 의미의 강제동원'보다 더 구체화시킨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다. 피고인이 좁은 의미의 강제동원과 넓은 의미의 강제동원을 구별한 이유

2007. 3. 아베 당시 수상의 발언인 "위안부 문제에서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성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발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 강제동원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강제동원'에 한정하느냐 아니면 '넓은 의미의 강제동원'으로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느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국의 책임 인정여부 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이며, 그 동안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학계와 관련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어졌습니다.

일본군과 정부가 '위안부'동원을 지시·지휘하되, 동원단계에서는 철저하게 민간인 업자의 '자발적 행위'로 위장하여 '은밀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강제동원'에 대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며.

따라서 '위안부'의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일본정부 및 우익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①일본군이 '위안부'를 직접 연행한 자료를 발굴하여 [협의의]의 강제동원 여부만 문제 삼는 일본정부에게 정면으로 반박하려는 흐름과 ②당시 사회구조적 현실 속에서 '위안부'의 강제동원이란 무엇인가를 재질문하여 '위안부'강제동원 범주의 외연을 넓히려는 흐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넓은 의미의 강제동원 즉 구조적 강제를 주장하는 것은 학계의 이러 한 두 번째 흐름에 따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 피고인은 '좁은 의미의 강제동원'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사건 도서 제23쪽

"제1호 위안부는 군이 모집은 했지만 그 모집에 군인이 직접 나서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물론 그는 <u>"그렇다고 군이 (위안부 모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다"(</u>25쪽)라 는 중요한 지적도 빠뜨리지 않는다.

○ 이 사건 도서 제38쪽

"<u>물론 군인이나 헌병에 의해 끌려간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u>, 개별적으로 강간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 이 사건 도서 제42쪽

<u>위안부'들의 증언은 자신을 데려간 주체가</u> '마을남자'이거나 모르는 아저씨였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이나 '군인'이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바. 구조적 강제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 제143쪽에서 구조적 강제에 대하여 "'자발성'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했고, '매춘부'라는 외견 속에 '성노예'라는 측면이 존재했다."고 서술하여 구조적 강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강제의 경우도 강제동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국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 피고인은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 하지 않았습니다.

가. 피고인은 위안소의 본질에 대하여 '강간적 매춘', '매춘적 강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위안부는 '성노예'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단언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위안부는 성노예였음을 명시하고, 위안소는 강간과 윤간이 허용된 가혹한 장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매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일본군이 위안소의 운영을 '관리매춘'의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학계나 위안부 관련 단체 등의 경우에서 위안소가 '관리매춘'의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것은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소의 운영 형태는 관리매춘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위안부들은 강간 혹은 윤간을 당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관리매춘'인 위안소의 본질에 대하여 피고인은 '강간적 매춘' 혹은 '매춘적 강간'이라고 표현하면서, 위안부를 성노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사용한 '매춘'이라는 단어에 '자발적으로'의 의미가 암시되거나 함축되어있다고 하면서, '강간적 매춘'이라는 표현 역시 자발적 매춘이지 이러한 표현에 성노예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N보고서인 '쿠마라스와미보고서'와 '맥두걸보고서' 등에는 위안 부에 대하여 '전쟁법을 위반한 강간과 강제매춘'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성노예는 또한 강제매춘의 거의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고 하여, 강제매춘의 경 우도 성노예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쿠마라스와미보고서는 '이미 매춘부였으며,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하여 위안부'가 된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쿠마라스와미보고서는 위안부 징집의 유형에 대하여 ①이미 매춘부였으며 자발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여성과 소녀들, ②식당이나 군인을 위해 요리하고 빨래하는 보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속임수로 여성들을 모집한 경우, ③대규모의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여성 납치 방법인데 이것은 일본 점령하의 국가들에서 행해진 노예사냥으로 구별하여, '이미 매춘부였으며, 스스로 자발적으로모집에 응하여 위안부'가 된 경우, 즉 일본의 위안부 문제의 부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자발적 매춘부'의 경우도 위안부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UN보고서 등에 의할 경우 위안부는 관리매춘의 형태로 이루어진 성노예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러한 학문적인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여이 사건 도서를 저술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인 위안부라 하더라도 '성노예'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설사 '자발적'으로 '희망'했다 하더라도 그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추업'이라고 불리던 일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은 사회적 구조였다." 라고 서술하여, 쿠마라스와미보고서에서 말하는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 하더라도, "'자발성'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했고, '매춘부'라는 외견 속에 '성노예'라는 측면이 존재했다."고 서술하여 그들 역시 구조적 강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 역시 성노예이고 피해자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4. 피고인은 위안부가 일본군에 애국적·자긍적으로 협력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애국적·자긍적으로 협력하였다고 서술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서에서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u>일본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자긍심을 가지고</u> 일본인 병사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안하여 주는 위안부로 생활하면서 일본군과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u>저항했으나 굴복하고</u>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을 한 몸에 경험한 존재로서 일본이 주체가 된 전 쟁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다녀야 했던 노예"이고, "<u>명확</u>한 '굴종'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강요당한 식민지인으로서, 위안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거부할 수 없고 도피할 수도 없었으며, 실제로는 '구조적인 강제'속의 선택밖에 할 수 없는 노예"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피고인은 위안부의 협력에 대하여 강요된 애국, 강요된 협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도서 제61쪽

국가가 일본인을 비롯한 '제국의 위안부'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성적 착취를 당하면서도 죽음을 앞둔 군인을 '후방의 인간'을 대표하여 '전방'에서 '위안'하고 그의 마지 막을 지켜보는 역할. 말하자면 '위안부'에게는 신체적 '위안'뿐 아니라 정신적 '위안'까지도 요구되 고 있었다.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이 사건 도서 제62쪽

물론 '조선인 일본군'이 그랬듯이, '애국'의 대상이 '일본'이었다는 점에서 <u>'조선인 위안부'들을 일</u> <u>본군 위안부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u>. 그러나 동시에, 그런 딜레마를 잊고 눈앞에 주어진 <u>'거짓</u> 애국'과 '위안'에 몰두하는 것은 그녀들에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2) 군수품으로서의 동지적 관계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 제55쪽에서 챕터의 소제목으로 "군수품으로서의

동지"라고 하여 동지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 의미를 제한하였으며, 이 사건 도서 제219쪽에서도 거듭 조선인 위안부가 군수품이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조선과 대만 등 식민지 출신 위안부는 애국이나 협력을 강요당하였지 만, 네덜란드, 중국 등 적국 출신의 위안부는 성노동만을 강요당하였기 때문에 식 민지 출신의 위안부에 대하여는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더 물어야 한다 는 입장에서 식민지 출신 위안부와 적국출신 위안부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구별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와 같은 "동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동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군수품으로서의 동지'와 같이 명확 하게 그 의미를 제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 도서 제219쪽에서 피고인이 조선인 위안부를 군수품이라 하고 네덜란드 위안부를 전리품이라고 서술한 것을 보아도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안부를 "군수품으로서의 동지적 관계", "일본군 남성에게 물건처럼 착취를 당했다", "위안부가 군인과의 관계에서 희생자였다", "표면 상으로는 '동지'적 관계"라고 명시하는 등 위안부와 일본군이 검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지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3) 구조적 강제 - 식민지인으로서의 모순

※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일본제국의 식민지배하에 있는 식민지인으로서 명확한 '굴종'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강요당하는 식민지 인들의 모순을 식민지배하의 "구조적 강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도서 제138쪽~139쪽

하지만 일본 지원자 측의 운동가나 연구자들 역시 그런 사실은 눈감았거나 보지 못했고, 조선인 위안부에게서 그저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만을 보려 했다. 그것은, <u>명확한 '굴종'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강요당한 '식민지'의 복잡한 구조</u>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국가와제국' 비판이 앞선 나머지 식민지의 미묘한 심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 이 사건 도서 제135쪽

물론 <u>위안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거부할 수 없고 도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u>에서 종속적이었다. 또 그녀들의 선택이 설사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u>실제로는 '구조적인 강</u>제' 속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녀들의 처지는 노예적이었다.

4. 위안부 개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1노308 판결은 "<u>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u>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하여 5.18민주유공

자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5.18민주유 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09고정366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 19. 선고 2010고합 51 판결 및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670 판결 등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의 취지는 <u>명예훼손적인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러한 명예훼손적인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는 경우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u>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은 피고인이 ①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을 강조(일본군의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②조선인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매춘의 틀안에 있는 여성이라거나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이고, ③조선인 위안부가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자긍심을 가지고일본인 병사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안하여 주는 위안부로 생활하면서 일본군과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서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술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검찰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위안부에 대하여 이 사건 도서에서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술하였다 하더라도, 위안부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동원 되어, 그 감시 아래 전시 상황의 중국, 동남아 등지에 설치된 위안소에 갇혀 최소 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하며 성 적 쾌락의 제공을 강요당한 '성노예'에 다름 없었을 뿐 본질적으로 매춘부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일본군은 위와 같이 설치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고, 위안부 를 국외송출하는 과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 하여 이미 그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서술에 의하여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 니다.

따라서 <u>설령 검찰의 주장과 같은 서술을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서술하였</u> 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안부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5. 명예훼손의 범의의 부존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서술의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위가 부존재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서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일본국의 책임을 부정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주 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좁은 의미의 강제동원이든 넓은 의미의 강제동원이든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안소는 강제매춘의 형태로 서 결국 위안부는 성노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좁은 의미의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일본국의 책임을 부정하는 위안부 부정론자를 비판하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구조적 강 제의 개념을 도입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하여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 표현하고, 일본국의 강제연행을 부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Ⅲ.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설령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거나, 암시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적시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 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입니다.

1.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입니다.

가. 범죄일람표 2번

공소사실 2번	가라유키상의 후예.' '위안부'의 본질은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 제9쪽 당시 기타큐슈의 동일한 지역으로 중개인들이 파견되었는데, 유곽에 서 자발적인 지원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역 소녀들에게 겉 으로는 군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는 돈 잘 버는 직업을 소개한다는 속임수를 동원했다.
ICJ 보고서	● 제229쪽 그 당시, 일본에서는 가난한 가정의 소녀를 사들여서 그 가족의 "대 출금"을 갚을 때까지 그 소녀를 시녀나 매춘부로 일을 시키는 관습 이 성행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발간 [전시체제기 조선의 사회상과 여성동원]-(증 제3호증의1	● 제2쪽 '위안소'제도의 뿌리가 메이지 유신 이후 대륙침략을 향해간 일본군을 뒤따른 카라유키상 및 합법적 여성인권유린 제도인 공창제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나. 범죄일람표 3번

공소사실 3번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u>'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u> <u>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u> 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 제7쪽 이 제도 속에서 절대다수의 여성들은 흔히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속된 매춘에 몸을 내맡기도록 강제당했 던 것이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 자등지원위원회 발간 [들리나요? 열두소녀이야기]	● 제30쪽 '위안소'에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문헌과 증언 속에서는 작부, 특수부녀, 추업부, 예 기, 창기, 여급 등의 호칭으로 나타나고, 위안소도 육군오락소, 구락 부, 군인회관, 조선요리옥 등의 호칭으로 불렸다.
ICJ 보고서	● 제229쪽 그 당시, 일본에서는 가난한 가정의 소녀를 사들여서 그 가족의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그 소녀를 시녀나 매춘부로 일을 시키는 관습이 성행했다. ● 제239쪽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일본 여성이 군대 내 매춘 시설에 가담했지 만,(중략) 결과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험이 없는 한국 여성들을 이용하게 되었고

다. 범죄일람표 4번

공소사실 4번	그에 따라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u>일반적인 '위안</u>
	부'의 대다수는 '가라유키상'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
	<u>다.</u>
	● 제17쪽
	1936년 내가 17살 때, 마을 이장이 우리집에 와서 공장에 일자리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집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그 보수 좋은 일자리 제의를 쾌히 받아들였다.
	● 제241쪽
	일본인 민간 전쟁포로와 함께 전쟁 포로로 입건된 한국인 '위안부'
ICJ 보고서	20명을 취조한 다른 연합군 보고서를 발견했다. 이 보고서는 미군
	소속의 심리전 조직인 미국 전쟁정보국 US Office of War
	information이 작성한 것이다(중략) 요원들은 수월한 모집을
	위해 높은 보수와 가족부채 탕감, 업무의 용이성, 싱가폴이라는 새
	로운 세계에서의 성공등의 논리를 사용했다. 이렇게 거짓된 전제하

	에, 많은 소녀들이 해외동원령에 지원했고 그 대가로 몇 백 엔을 선금으로 받았다. 소녀들 중 극소수는 지구상 최고의 역사를 가진 업종인 매춘에 종사한 적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순진한 소녀들이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발간 [전시체제기 조선의 사회상과 여성동원]-(증 제3호증의1)	● 제2쪽 '위안소'제도의 뿌리가 메이지 유신 이후 대륙침략을 향해간 일본군을 뒤따른 카라유키상 및 합법적 여성인권유린 제도인 공창제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라. 범죄일람표 5번

공소사실 5번	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땅에 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수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 제9쪽 당시 기타큐슈의 동일한 지역으로 중개인들이 파견되었는데, 유곽 에서 자발적인 지원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역 소녀들에게 겉으로는 군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는 돈 잘 버는 직업을 소개한다 는 속임수를 동원했다.
	● 제9쪽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안소의 설립과 운영에 민간업자들이 참여하 게 되었는데, 이들은 군요원들이 요청을 했거나 자기주도적으로 허 가를 신청한 이들이었다. 군이 매춘업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생각되었고, 민간업자의 시설이 군을 위해 더 "어울린다"고 생각 되었기 때문이었다.
	● 제 10쪽 여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군을 위해 일하는 민간업자들 뿐만 아니라 일본과 협조하여 일하고 있던 조선의 순사들도 마을로 와 서 보수 좋은 일자리를 약속하며 처녀들을 속이곤 했다. 1942년 이 전의 수년간은 조선의 순사들이 마을에 와서 "여자정신대"를 모집 했다.
	● 제17쪽 1936년 내가 17살때, 마을 이장이 우리집에 와서 공장에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집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그

	보수 좋은 일자리 제의를 쾌히 받아들였다. ● 제92쪽
맥두걸 보고서	● 제92독 "많은 경우에 군당국의 요구를 대변하는 위안소 운영자들의 부탁을 받은 민간인 알선업자들이 위안부 모집에 나섰다. 전쟁이 확산되어 점차 더 많은 위안부에 대한 요구가 밀려듬에 따라 이 업자들은 많은 경우에 이 여성들을 감언이설과 협박으로 자신의 의사에 거 슬러 모집되도록 하였고 관헌 등이 모집에 직접 가담한 경우조차 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 자등지원위원회 발간 [들리나요? 열두소녀이야기]	● 제3쪽 우리가 '강제동원'에서 말하는 '강제성'이란, 반드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결박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 행위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밖에 협박이나 유인, 기망 등 위법적인 수법으로 피해자를 모집 한 다음 상시적 감시 또는 감금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을 시키고, 피 해자로 하여금 맡을 일의 선택과 맡은 일에서 벗어날 자유를 박탈 한 상태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히 이 책은 일본군위안 부 강제동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제31쪽 조선인 여성이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된 방식은 취업사기, 협박 및 폭력에 의한 동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이다. '공장에 취직시켜 주 겠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여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동 원하였다.
ICJ 보고서	● 제227쪽 슬프게도 다수의 한국인이 무력에서 개인적 이익에 달하는 여러이유로 여자들을 모집하는데 일본 당국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4장에서 밝혀진 진술에서, 희생자 다수가 그들이 예초에 한국민간인에 의해 끌려왔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사람들이 일본이 왜그들을 통해서 어린 소녀와 여자들을 대규모로 모집했는지 모른체 가담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제241쪽 일본인 민간 전쟁포로와 함께 전쟁 포로로 입건된 한국인 '위안부' 20명을 취조한 다른 연합군 보고서를 발견했다. 이 보고서는 미군소속의 심리전 조직인 미국 전쟁정보국 US Office of War information이 작성한 것이다(중략) 요원들은 수월한 모집을 위해 높은 보수와 가족부채 탕감, 업무의 용이성, 싱가폴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의 성공등의 논리를 사용했다. 이렇게 거짓된 전제하

에, 많은 소녀들이 해외동원령에 지원했고 그 대가로 몇 백 엔을

	선금으로 받았다. 소녀들 중 극소수는 지구상 최고의 역사를 가진
	업종인 매춘에 종사한 적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순진한 소녀들이었다.
	● 제12쪽
	필리핀이나 중국 등 점령지에서는 군인이 전면에 나섰지만, 식민지
	에서는 군인이 대대적으로 총검을 앞세우고 나물캐는 조선처녀를
	강제로 실어서 끌고 가는 것과 같은 행태의 징집보다는, 취업사기
	나 인신매매와 같은 이미 조선에 이식되어 있던 공창제도의 메커
	니즘이 이용되었습니다.
ᄀᆺᆸᄎᆸ	
고소보충서	● 제14쪽
	점령지와 달리 취업사기나 인신매매 등과 같은 형태의 징집이 많
	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제17쪽
	고노담화가 위안부의 징집 및 위안소 제도의 주체를 일본군으로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마. 범죄일람표 11번

공소사실 11번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u>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u> 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 제13쪽 하타 박사는 설명하기를 자신이 1991/92년에 증거 수집을 위해 한 국의 제주도를 방문했었는데, "위안부 범죄"의 주범은 사실상 조선 의 유지들이거나 포주 그리고 심지어 소녀들의 부모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 제17쪽 1936년 내가 17살때, 마을 이장이 우리집에 와서 공장에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집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그 보수 좋은 일자리 제의를 쾌히 받아들였다.
ICJ 보고서	● 제240쪽 원로이 챈 Won-loy Chan은 그가 발표한 버마-알려지지 않은 이야 기라는 저서에서(중략)2차세계대전동안 일본 황군에 의해 매춘 을 강요받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 한다. 대략 2만명 가량으로 추정

	되고 있는데 일부는 도시 빈민이거나 이전에 매춘업에 종사했던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 농부나 소작농 가정 출신이다. ● 제241쪽 일본인 민간 전쟁포로와 함께 전쟁 포로로 입건된 한국인 '위안부' 20명을 취조한 다른 연합군 보고서를 발견했다. 이 보고서는 미군 소속의 심리전 조직인 미국 전쟁정보국 US Office of War information이 작성한 것이다(중략) 요원들은 수월한 모집을 위해 높은 보수와 가족부채 탕감, 업무의 용이성, 싱가폴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의 성공등의 논리를 사용했다. 이렇게 거짓된 전제하에, 많은 소녀들이 해외동원령에 지원했고 그 대가로 몇 백 엔을 선금으로 받았다. 소녀들 중 극소수는 지구상 최고의 역사를 가진 업종인 매춘에 종사한 적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순진한 소녀들이었다.
고소보충서	● 제20쪽 그러므로 센다 카고의 글만으로는 일본군'위안부'가 가지는 식민지 지배나 전쟁 책임의 문제, 가부장제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 으며 센다 카고 역시를 이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발간 [전시체제기 조선의 사회상과 여성동원]-(증 제3호증의1)	● 제3쪽 그런데 인신매매 등의 여성 징모 방식이 '위안부'의 동원과 함께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공창제라는 합법화된 성매매 제도 하에서 양산된 여성의 공사창업 유입방식이었다. 근대 공창제 하에서 형성된 여성의 인신매매 메커니즘과 농촌경제의 파탄에서 비롯된 빈곤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위안부' 동원의 배경이 되어 준 것이다.

바. 범죄일람표 12번

공소사실 12번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 이해했지만, '위안'이란 기본적으로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다.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u>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u> 간'이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 제8쪽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 중 그들이 "번" 돈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Ţ
	● 제12쪽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은 그들의 "봉사"의 대가로 돈을 지불 받도록 되어있었고, 돈 대신에 받은 군표를 모았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조 금이나마 "번 돈"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은 극히 적었다. 이렇게 해 서, 전쟁이 끝나면 돈을 모아서 자신이나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 던 작은 희망도 일본군이 퇴각한 이후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렸 다.
맥두걸 보고서	● 제58쪽 성노예는 또한 강제 매춘의 거의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강제매춘"(forced prostitution) 또는 "강요된 매음"(enforced prostitution) 이라는 용어는 국제인도법 협약에서 발견되지만 충분히 이해되지도 일관되게 쓰이지도 않았다. "강제매춘"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 성활동에 종사하도록 강제된 사람에 대한 지배상태를 가리킨다.
	● 제97쪽 강제매춘과 강간에 관하여 일본정부는 그 행위들이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것을 인정했다. 명시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해악이 정기적인 강간과 강제적 성행위를 포함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들은 전쟁법을 위반한 강간과 강제매음으로 쉽게 성격지워진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 자등지원위원회 발간 [들리나요? 열두소녀이야기]	● 제33쪽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직접 돈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신 병사 몇 명을 상대했는지 증명할 수 있도록 오늘날의 전표와 비슷한 군표나 금권을 받았다. 나중에 표를 돈으로 바꿔준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업주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동원당시 이동비, 의복비, 식비 등과 위안소 생활비 등을 대가에서 공제하여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ICJ 보고서	● 제231쪽 요금은 다음 표에서 명시한 데로 정해져 있다. ● 제233쪽 13. 관리자는 군대내의 티켓을 "안락표(relaxation ticket)"로 교환해 준 후 여종업원이 받은 안락표를 영수증으로 기록해야 한다. ● 제234쪽

35. E. 요금은 군대용 티켓으로 지불된다.

● 제237쪽

요금표와 시간표가 부대의 명령에 따라 정해졌는데, ...(중략)... 요금 은 티켓제로 운영되었는데...(후략)

● 제248쪽

"우리가 보는 앞에서 바닥에 두었던 깔끔하게 싸여져 있는 지폐뭉치를 꺼내었다." ...(중략)... 돈 뭉치는 10루피 짜리 지폐였는데 일본점령기동안의 군지폐였다. 군지폐는 일본 정부가 어떤 불특정 날짜까지 버마돈 10 루피를 지불하겠다는 서면서약이라 할 수 있다. ... (중략)...누구는 웃었고 누구는 울었으며, 나는 이 소녀들이 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종이 지폐를 벌어들이기 위해 참아야 했던 상황들을 생각하자 마음이 저렸다."

사. 범죄일람표 27번

공소사실 27번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
○고시크 2/킨	<u>들</u>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 제6쪽 이와 같은 구실에 많은 여성들이 기만당해 군 성노예가 되었고, 정신대가 매춘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곧바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제7쪽 일본군은 단순히 하나의 유흥시설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보이는 매춘 제도의 세부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상해와 오키나와 그리고
	일본 및 중국의 다른 지역들과 필리핀에 있었던 위안소들을 위한 규칙들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위생에 관한 규칙·이용시간·피임법·여성에 대한 요금·술과 무기의 금지 등에 관한 상세한 기록들이 엿보인다.
	● 제8쪽 바로 이 같은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증언을 삽화로 치부 하거나 심지어는, 본질적으로 사적이며, 따라서 민간인이 운영한 매 춘이라는 제도에 정부를 연루시키려고 꾸며낸 것으로 치부하여 거 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 제9쪽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안소의 설립과 운영에 민간업자들이 참여하 게 되었는데, 이들은 군요원들이 요청을 했거나 자기주도적으로 허 가를 신청한 이들이었다. 군이 매춘업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생각되었고, 민간업자의 시설이 군을 위해 더 "어울린다"고 생각 되었기 때문이었다.

● 제13쪽

여기에는 군장교와 병사들을 위한 군대 매춘굴이 군 통제 하에 운 영되었고, 약1000명의 '위안부"들이 10만명의 그 지역 군인들을 상 대했다고 되어있다.

● 제20쪽

제58쪽

일본 정부는 성노예를 목적으로 하여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은 인도에 반한 범죄이자 인도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평화에 반한 범죄일 뿐 아니라 노예제라고 하는 범죄와 인 신매매 및 강제매춘의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다.

맥두걸 보고서

성노예는 또한 강제 매춘의 거의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강제매 춘"(forced prostitution) 또는 "강요된 매음"(enforced prostitution) 이라는 용어는 국제인도법 협약에서 발견되지만 충분히 이해되지 도 일관되게 쓰이지도 않았다. "강제매춘"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에 의해 성활동에 종사하도록 강제된 사람에 대한 지배상태를 가 리킨다.

● 제219쪽

일본군에게 성적 쾌락을 제공하기 위해 속임수나 폭력, 심지어 납 치까지 동원해 어린 소녀와 여성을 연행하여 소위 완곡하게 '위안 소'라 불리운 군대 매춘(military brothel)을 대규모로 시행하였다.

ICJ 보고서

● 제245쪽

1945년 11월 15일 연합군 보고서의 부록 "D"는 마닐라의 매춘영업 소에 대한 경찰의 보고들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이 경찰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군대 매춘영업소들을 사적으로 관리하 는 사람의 탐욕과 관련된 것이다.

고소보충서	● 제12쪽
	필리핀이나 중국 등 점령지에서는 군인이 전면에 나섰지만, 식민지
	에서는 군인이 대대적으로 총검을 앞세우고 나물캐는 조선처녀를
	강제로 실어서 끌고 가는 것과 같은 행태의 징집보다는, 취업사기
	나 인신매매와 같은 이미 조선에 이식되어 있던 공창제도의 메커
	니즘이 이용되었습니다.

아. 범죄일람표 30번

공소사실 30번	'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u>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u> ,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위안소'의	
	최대 공급원"(110쪽)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 제6쪽-제7쪽	
	한편 "위안부"들에 대한 착취는 심지어 일본에서도 계속되었는데,	
	이곳에서는 공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몇 군데 위안소가 세워졌다.	
ICJ 보고서	● 제242쪽	
	중국, 한국, 일본 여자뿐만 아니라 대만과 필리핀, 인도에서도 여자	
	들이 차출되어 군대 매춘소에서 착취되었다. 어떤 문서에서는 네덜	
	란드계 여자들도 존재했다고 밝히고 있다.	
	● 제12쪽	
고소보충서	필리핀이나 중국 등 점령지에서는 군인이 전면에 나섰지만, 식민지	
	에서는 군인이 대대적으로 총검을 앞세우고 나물캐는 조선처녀를	
	강제로 실어서 끌고 가는 것과 같은 행태의 징집보다는, 취업사기	
	나 인신매매와 같은 이미 조선에 이식되어 있던 공창제도의 메커	
	니즘이 이용되었습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 제3쪽	
진상규명위원회 발간 [전시체제기 조선의 사회상과 여성동원]-(증 제3호증의1)	그런데 인신매매 등의 여성 징모 방식이 '위안부'의 동원과 함께 시	
	작된 것은 아니었다. 공창제라는 합법화된 성매매 제도 하에서 양	
	산된 여성의 공사창업 유입방식이었다. 근대 공창제 하에서 형성된	
	여성의 인신매매 메커니즘과 농촌경제의 파탄에서 비롯된 빈곤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위안부' 동원의 배경이 되어 준 것이다.	

자. 범죄일람표 34번

공소사실 34번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u>이미지</u> 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	---------------------	-------------------------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 제9쪽		
	이미 매춘부였으며, 자발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여성과 소녀들을 모	
	집한 경우, 식당이나 군인을 위해 요리하고 빨래하는 보수 좋은 일	
	자리를 제공한다는 속임수로 여성들을 모집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	
	으로 대규모의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여성 납치 방법인데 이것은	
	일본 점령하의 국가들에서 행해진 노예사냥과 같은 것이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 제10쪽	
	더욱이 매춘에 붙어 다니는 오명 때문에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정신	
	대로부터 돌아올 수 있었던 여성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	
	기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다른 소녀들에게 위협을 경고할 수 없었	
	다. 대부분의 여성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무시무시한 경험들을 숨기	
	느라고 고심하며 사회에 재통합되었다.	

2. 피고인의 집필 동기의 공익성

가. 위안부들의 운동으로부터의 해방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통해 위안부들이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보상을 받고 '운동으로부터 해방'되어 '한 사람의 개인'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싶다는 바람 때문입니다.

○ 이 사건 도서 제257쪽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운동의 전진' 자체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고, 그것을 통한 '위안부'들의 '운동으로부터의 해방'이다.

○ 이 사건 도서 제306쪽

지금 필요한 일은, 그들을 '올바른 조선인 투사'로 존재하게 하면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 아니다. 그저 그들을 '한 사람의 개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

○ 이 사건 도서 제189쪽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운동'을 20년 동안이나 게속하면서 병들고 나이든 위안부들에게 '한국의 자존심'을 대표하게 하는 것은 과연 '당사자'의 뜻을 존중한 일이었을까. 그녀들을 노구에 채찍질하며 길거리에 나서는 '투사'로 만든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미 한 번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원치 않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올바른' 민족의 딸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민족'의 억압이 아니었을까.

○ 이 사건 도서 제190쪽

20여 년간 이어진 '위안부 문제'란 지원단체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그런 욕망과 기대가 우선시되면서 '당사자'들의 '지금, 이곳'에서의 고통은 잊혀진 문제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처럼 '운동을 위한 운동'이 되어버린 현 상황을 만든 정대협을 비판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죄와 보상을 받고 이제는 민족을 대표하는 투사가 아닌 한 사람의 개인으로 돌아가 평화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건 도서를 서술한 것입니다.

나. 정대협과 일본의 위안부 부정론자에 대한 비판

1) 이 사건 도서는 '권력화된 정대협'과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의 위안 부 부정론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서술된 책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 제120쪽에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위안'이란 기본 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 슬 구조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고 서술하여,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이라고 생각하는 위안부문제 부정론자의 주장과 위안을 강간이라고만 생각하는 정대협 등 지원단체의 입장이 평행을 달리면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하여 양쪽 모두의 잘못된 생각과 운동방향을 비판하면서, "운동의 지속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을 지향한다면 이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여,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선행될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도서를 저술한 것입니다.

2) 정대협 등 지원단체에 대한 비판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정대협이 진행하여 온 위안부 운동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운동이 아닌 '한국의 자존심'을 세우는 운동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비 판하고자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현재 정대협 등 지원단체는 식민지였던 조선인 위안부와 적국이였던 네덜란드 위안부 등을 같게 취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대협의 입장은 조선인 위 안부의 경우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드는 불합리한 주장이라 비 판하고 있으며,

또한 정대협 등 지원단체의 운동은 위안부 문제 해결 보다 진보가 세상을 바꾸는(우익을 물리쳐 세계를 이끄는) 정치적인 문제에 더 중점이 두어져 있으며, 일본의 지원자들이 천황제 비판에 대한 집착이 컸으며, 이러한 정치운동의 결과 90년대 이후 20년 동안의 진보좌파의 연대운동은 결과적으로 20년 전보다도 더 많이 위안부 문제에 반발하는 이들을 만들어 놓았으며, 이러한 지원단체의 운동방식을 비판하고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하여 이 사건 도서를 저술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지원단체의 운동이 주력해온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일본을 움직일수 있었다면, 2000년에 도쿄에서 열렸던 여성국제전범재판에서 내려진 판결, 즉'천황히로히토 및 일본국을 강간 및 성노예 제도에 관해 인도에 대한 최로서 유죄'라고 했던 것 이상의 압박은 없으며,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다른 유럽국가들이 일본의 사죄를 요구했던 2007년의 각국의 국회결의만으로도 일본은 움직였을 것"이라고 서술하면서 "실제로는 도쿄여성국제전범재판 이후 12년,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국회 결의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일본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건 '운동'이 지향한 밖에서 부터의 압박방식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서술하여 운동의 방식이 변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은일본과의 직접담판을 통하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과의 대화를 시작할 것을 이 사건 도서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도서 제189쪽

그동안 지원단체와 위안부의 '해결운동'이 길어지면서, 또 운동이 대외적으로 성공하면서, 수요시위를 비롯한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은 어느새 해결 자체보다도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한국의 힘'을 확인하는 싸움이 되고 있다.

○ 이 사건 도서 제210쪽

그녀는 그렇게 일찍부터 정대협과 갈등을 겪었고 세상을 향해 호소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공론화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본인에겐 엄청난 시련이었을 과정이 우리 사회에 조금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녀-당사자와 정대협-지원단체 간의 힘의 차이를 말해준다. 실제로 위안부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관심과 함께 그에 따른 힘을 얻으면서 정대협은 권력화 되었다.

○ 이 사건 도서 제210-211쪽

그렇게, '정대협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이들은 단순히 비판받는 정도를 넘어 위안부와 지원단체가 대표하는 '민족에 대한 사죄'를 해야 할 만큼 정대협은 어느새 '민족을 대표하고 있었고, 그힘은 절대적이었다.

○ 이 사건 도서 제213쪽

그런 위안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대협은 이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다. 정대협 관련 인사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그렇게 정대협의 힘은 어느새 대통령도 이길 만큼 강해져 있었다.

3) 일본의 위안부문제 부정론자에 대한 비판

○ 이 사건 도서 제82쪽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이 '민간인이 멋대로'영업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바로이런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이 사건 도서 제120쪽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이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들이 위안부에 관한 기억 중 '그들만의' 기억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 이 사건 도서 제133쪽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이 '위안부의 증언은 거짓말'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안부의 그런 '변화'는 의식적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듣는 이들의 기대가 그렇게 만든 측면이 크다. 증언을 듣기 위해 모인 이들은, 미리 인지된 지식을 바탕으로 그지식이 보완되기를 무의식적으로 바랐을 테니까. 한국인이라면, 그 피해가 더 가혹할수록, 더 끔찍할수록, 일본에 대한 분노를 키우고 당당해질 수 있게되니까, 증언의 장이 어떤 이야기를 요구하는지는 위안부들 역시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 이 사건 도서 제142쪽

그런 이들 중에는 위안부란 피해자이기는커녕 오히려 '가난한 병사들의 돈을 가로채서,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문제는 부인하는 이들 역시(그래서 그들은 한국이 갖는 위안부상을 그저 거짓이라고만 말하는데), '위안부란 매춘부'라는 하나의 상만 고집해왔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두고 대립해온 이들은 각기보고 싶은 내용에만 주목하면서 그 것만을 위안부의 '진실'로 생각해온 셈이다.

○ 이 사건 도서 제151쪽

일본의 부정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른바 '강제연행'설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하지만 위안부를 모집한 중심 주체가 민간인이라 해도, 또 모집하는 데에 사기나 납치 등의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병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상부 역시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이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려 했다 해도 불법적인 수단이 자행되는 시스템 자체를 방기했다면 시스템을 유지시킨 책임이 군에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중략)… 그런 식의 일방적 권력의 존재는 군이시스템을 '관리'한 관리자라는 사실, 다시 말해 '관여'했을 뿐 아니라 주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군이 모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군의 관여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이유다.

○ 이 사건 도서 제153쪽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온건했고 좋은 통치였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온건하고 좋은 통치란 어디까지나 체제에 저항하지 않는 이들에게 한정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일본의 통치가 총체적인 '온건통치'였던 것은 일본 국가에 대한 복종이 전제된 공간에서의 일이었다.

○ 이 사건 도서 제157쪽

위안소의 이용을 '상식'이자 '합법'으로 여기는 사고에는 그 상황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감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사람의 여성을 압도적인 다수의 남성들이 윤간했다는 사실, 한 사람의 인간을 '인간'이라기 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일본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닐까.

○ 이 사건 도서 제163쪽

부정하는 이들은 또한 "왜 전후 65년이나 흐른 지금에서야 비난"(기무라사이조)하느냐며 "역사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재판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이유는 당시의 일본이 위안소 관리와 이용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른 후 그것이 '나쁜' 일로 인식된다면 6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재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재심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 이 사건 도서 제163-164쪽

그들은 또 "피해망상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한국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일본을 비난하는 미국을 비난하며 "일본은 진실을 전달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일본이 오랫동안 이런식으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 역시 문제가 전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기금' 이후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 소결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를 집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2007년 3월, 아베 당시 수상이 아베 당시 수상이 "위안부 문제에서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성 은 없었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다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게"(이 사건 도서 제171쪽) 된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를 통하여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성이 없다며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의 위안부 부정론자들을 비판하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운동이 아닌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권력화된 정대협'을 비판하고 궁극적으로 생존하고 계신 위안부들이 일본으로부터 사죄와보상을 받고 '운동으로부터 해방'되어 '한 사람의 개인'으로 돌아가게 해주고자 하였던 것이지,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Ⅳ. 결 론

이 사건 명예훼손사건은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사건인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건은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사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란 피고인이 검찰의 주장대로 ①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을 강조(일본군의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②조선인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매춘의 틀안에 있는 여성이라거나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이고, ③조선인 위안부가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자궁심을 가지고 일본인 병사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안하여 주는 위안부로 생활하면서 일본군과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서술하였을 경우 문제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검찰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①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어, ②그 감시 아래 전시 상황의 중국, 동남아 등지에 설치된 위안소에 갇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하며 성적 쾌락의 제공을 강요당한 '성노예'에 다름 없었을 뿐 본질적으로 매춘부가 아니었고, ③일본국과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긍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으며, ④일본군은 위와 같이 설치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고, 위안부를 국외송출하는 과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하였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의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가 "피고인이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제국의 위안부에서 서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도서를 전혀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신문칼럼에도 "이 사건 도서를 굳이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쓰면서 피고인이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서술하였다고 비난하는 언론인도 등장하였으며, 트위터 등 각종 SNS에는 일부 정치인 등 저명인사들도 "읽어봐야아느냐"며 이 사건 도서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계속하여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이 사건 도서에서 서술하지 않았다",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부정하지 않았다" 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있으며, 무차 별적인 비난만이 피고인에게 쏟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비난자들중의 대부 분은 이 사건 도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젊은 학자들의 집담회에 나온 토론자들조차도 제대로 이 사건 도서를 읽지 않고 토론에 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검찰제출 증거 제41호증 - 젊은 역사학자들 [제국의 위안부]를 말하다)

이들의 집담회 자료를 보면 이 사건 도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상당부분 오류가 있는 토론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발언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 전체가 피고인을 향하여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와 다르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 도서를 읽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표현하였다고 피고인을 비난하고, 피고인은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아주 이상한 논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계속하여 보아왔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며, 강제동원을 부정하지도 않았으며, 위안부들이 일본국에 애국적·자긍적으로 협력하였다고 서술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도서를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명확하게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며, 강제동원을 부정하지도 않았으며, 위안부들이 일본국에 애국적·자긍적으로 협력하였다고 서 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의하여 피고인이 서술한 내용의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분만을 떼어내어 피고인이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표현하였다고 비난을 가하고 있으며,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 계속하여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올바른 사회는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표현한 말 또는 글이 명예

훼손적인 표현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말 또는 글 중의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 주장하고, 자신이 아무리 나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비난만 퍼붓는 세상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명확하게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며, 강제동원을 부정하지도 않았으며, 위안부들이 일본국에 애국적·자긍적으로 협력하였다고 서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 의한 의도된 편집에 의하여 피고인은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표현하였다고, 또 위안부에 대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제국의 위안부에서 서술하였다는 피고인의 저술 의도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강요받을 순간에놓여있습니다.

이런 강요를 받는 세상이 옳지 않은 세상임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부디 재판부께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바랍니다.

2016. 12.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홍세욱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다) 귀중